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성 비위 소청 사건 심사 시 소청사건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 및 상위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

3. 주요내용

가. 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(안 제10조의2)

- 1) 성 비위 소청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건 심사의 엄정성 요구
- 2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의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 신설
- 3) 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

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

- 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4조 제2항이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「소청절차규정」 제9조에 해당 사항 반영 필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17. ~ 4. 25.)

3) 행정규제 : 생략

대통령령 제 호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

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14조제2항”을 “제1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피해자의 진술권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한 소청 사건의 피해자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위원의 기피·회피) ① 소	제9조(위원의 기피·회피) ① ---			
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	-----			
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제	법 제14조제3항-----			
척사유 또는 심사·결정의 공정	-----			
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	-----			
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그	-----			
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	-----			
며,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	-----.			
<신설>	제10조의2(피해자의 진술권) 위원			
	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			
	위에 대한 소청 사건의 피해자			
	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			
	에 해당 피해자에게 위원회에			
	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			
	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			
	할 수 있다.			
	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			
	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성			
	폭력범죄			

	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행정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665